

영광군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영 광 군 수

2021년 11월 30일

영광군 훈령 제424호

붙임 영광군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1부. 끝.

영광군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광군 후원명칭을 사용·관리함에 있어 그 대상행사, 신청절차 및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문화, 체육, 관광,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군의 명칭,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현황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대상행사) ①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여 법인 또는 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예산이나 인력, 행정 등을 지원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소관부서의 지원계획 수립으로 해당 행사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후원명칭의 사용신청)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나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기준 및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 목적이 정부 정책 또는 군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3. 행사의 안전성,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여부
 4. 물품 구입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적합 여부
-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서를 신청인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공익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소관부서의 장 및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소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행사진행 상황을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7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1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에 앞서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사용결과 확인) 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사결과보고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내용
3. 행사참가자 인원
4. 행사결과
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서					
신청기관	기관명				
	소재지	연 락 처	전화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생 년 월 일			
행 사 명					
승 인 일 자					
행 사 목 적					
행사주최(주관)					
행 사 장 소					
참 석 대 상 및 인 원					
행 사 내 용					
행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후원명칭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 인 조 건					
기타 참고사항					

